

작 성 요 령

1. 재무구조개선이행보고서는 부동산의 양도일 또는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.
2. ⑧란에는 1997.7.1이후 양도분으로서 1997.6.30이전에 계약금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 부채상환액을 기재합니다.
3. 재무구조개선이행보고내용은 별지 제19호의4서식 부표상 각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.
4. ⑪·⑮란 상환예정일자 및 상환예정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부동산을 양도한 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재합니다.
5. <16>상환일자란에는 양도일전의 계약금등에 의한 부채상환으로 양도일전에 부채상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양도일을 기재하며 양도일 하단에 괄호로 실제상환일을 기재합니다.
6. <24>란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.
 "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"은 최초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합니다.

$$\frac{\text{<22>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차입금총액} - \text{<17>상환누계액}}{\text{<23>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}}$$

위 산식에서 1997. 12. 31이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<22>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차입금총액에 1997. 12. 31이전의 금융기관 부채상환누계액을 가산하며, <23>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1997. 12.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말합니다.

